



제 42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의 제조·판매 등 금지 〉

■ 박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260호)

2025.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의 제조·판매 등의 금지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정훈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1. 6.

다. 회부연월일 : 2025. 1.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이스 피싱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070 등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번호를 010과 같이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거짓으로 표시하는 장치인 발신번호 변작기(SIM BOX)가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서 누구든지 쉽게 구매가 가능한 상황임.

현행법에서는 발신번호 변작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제재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세관에서는 발신번호 변작기가 적발되어도 수입을 허가하고 있는 상황임. 보이스 피싱에 사용되다 경찰에 적발된 발신번호 변작기는 2021년 500여 대에 불과했지만, 2022년 1만 4천여 대, 2023년 1만 6천여 대로 급증했고, 올해도 이미 6천 대를 넘긴 상황임.

이에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제2항 및 제95조의2제5호).

Ⅲ. 검토의견

1.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의 제조·판매 등의 금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주로 활용되는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장치인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의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재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① (생략)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u>제공하여서는</u>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 <u>제공하거나</u>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u>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여서는</u> -----.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의2(벌칙)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8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u>제공한</u> 자	5. ----- ----- ----- ----- -- <u>제공하거나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한</u> ---

□ 검토의견

-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SIM Box)는 여러 장의 SIM 카드를 장착하여 이동통신망에 접근하는 허브(Hub)를 의미하며,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에 여러 SIM 카드를 연결하면 휴대전화 발신 정보의 조정이 가능하여, 해외에 출장 중인 사업자 등이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활용하면 국내에 있는 것처럼 고객들에게 전화 연결이 가능함.
-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는 해외에 공장 등 업체가 있는 사업자가 국내의 고객에 접근하기 쉽게 도와줄 수 있는 긍정적 역할도 있

는 반면, 보이스 피싱 범죄에서 해외에 있는 범죄 단체가 국내 전화 번호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를 확대시키는 문제점도 있어,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경찰청에 따르면, 기관사칭형 보이스 피싱 범죄는 2016년 3,384건에서 2023년 11,31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그 피해액도 2016년 541억원에서 2023년 2,364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범죄도 발생건수는 2016년 대비 2023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피해액은 2016년 927억원에서 2023년 2,108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알 수 있음.

<연도별 보이스피싱 범죄 현황>

(단위: 건, 억원,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기관 사칭형	발생건수	3,384	5,685	6,221	7,219	7,844	7,017	8,930	11,314
	피해액	541	967	1,430	2,506	2,144	1,741	2,077	2,364
	검거건수	3,860	3,776	4,673	5,487	4,297	1,954	4,103	7,352
	검거인원	5,682	4,925	5,491	6,045	4,797	1,895	4,500	8,039
대출 사기형	발생건수	13,656	18,574	27,911	30,448	23,837	23,965	12,902	7,588
	피해액	927	1,503	2,610	3,892	4,856	6,003	3,361	2,108
	검거건수	7,526	15,842	25,279	33,791	29,754	25,693	20,419	13,639
	검거인원	9,884	20,548	32,133	42,668	34,527	24,502	20,530	14,347

자료: 경찰청, 보이스피싱 현황, 2024. 5.

○ 이러한 보이스 피싱 등 범죄 행위를 위해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행위는 현행법 상에서도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 포함)’에 대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공익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에 발신번호 변작을 허용하고 있음.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1)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대국민서비스 제공 또는 기관 고유의 업

1)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 ① 법 제8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대국민서비스 제공 또는 기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2.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1조의 특수번호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특수번호에 연결되어 있는 착신 전화의 발신번호를 해당 특수번호로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3. 전기통신사업자가 국외에서 발신된 전화의 발신번호 앞에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 제3항제1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식별번호(이하 "국제전화 식별번호"라 한다) 또는 009를 삽입하여 표시하는 경우
4.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제4항제4호의 착신과금서비스와 같은 세칙 제3조제21호의 대표번호서비스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서비스의 전화번호에 연결되어 있는 착신 전화의 발신번호를 해당 서비스의 전화번호로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5. 전기통신사업자가 동일한 이용자 명의로 각각 가입한 유선전화 서비스(시내전화 및 인터넷 전화)간에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6.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무수행을 위해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자가 동일한 이용자 명의로 각각 가입한 유선전화 서비스(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간에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발신번호 변작이 허용됨.

- 또한, 같은 법 제30조²⁾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 질서유지, 전기통신설비를 개발·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한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사기 등 범죄에 활용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 다만, 현행법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 따라 범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 상 금지행위로 규정하거나

2)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구조, 교통·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범죄 등에 사용될 것이 분명한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의 제조·수입 등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문제점이 있음.

○ 동 개정안은 사기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공익 목적 등 예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범죄 행위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의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것으로 최근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이라는 면에서 그 입법취지가 인정될 수 있으며 타당하다고 보임.

○ 동 개정안에 대한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누구든지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발신번호 변작기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제재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상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거짓으로 표시하는 장치인 발신번호 변작기(SIM BOX)가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쉽게 구매가 가능하여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불법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 단계부터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종합적으로 보면, 동 개정안에 따라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이유

로 발신번호 변작기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방지해야 할 입법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225